

“어디서나 주총 참여”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210곳 ‘전자주총’ 의무화

- 법무부,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마다 연차를 내고 원거리 주주총회장을 찾아야 했던 소액주주들의 불편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주주총회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되어 개최된 결과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발하였고, 이로 인해 주주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개정된 상법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5. 28.)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주주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안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 *에 대해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국내외 주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주주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자주주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2025년 말 기준 210개 상장회사(코스피 201개 회사, 코스닥 9개 회사)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통해 국내외 주주들은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하여 2026년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할 예정으로 2027. 1. 1.부터 전자주주총회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 1. 개정 상법 시행령 주요 내용 1부

담당 부서	법무실 상사법무과	책임자	과 장 최성수 (02-2110-3617)
		담당자	검 사 권영우 (02-2110-4458)
		담당자	전문위원 오석진 (02-2110-3635)



개 정 시 행 령		주 요 내 용
전자 주주 총회	① 의무 개최대상 회사 범위 (제42조의2)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
	② 개최 요건 (제42조의3)	· 전자주주총회의 소집 등 직무 수행시 따라야 하는 기준 및 절차 마련 · 개최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물적 설비 구비 등
	③ 운영 규정 (제42조의6)	· 동시접속회선 확보, 서버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사전신청한 주주에 대해서만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 · 전자주주총회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 또는 분량 제한 가능 등
	④ 관리기관 요건 (제42조의5)	· 적절한 인적·물적 설비 · 주주 개인정보 등 보호 체계 · 사고 등에 대비한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완설비 등 필요
	⑤ 출석 방법 (제42조의6)	· 주주가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본인 확인 절차(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법상 본인 확인 절차) 규정 · 전자서명 등을 활용할 수 없는 외국 거주 외국인 주주를 위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주주식별번호 및 암호를 입력하는 등 회사가 주주의 본인 확인을 위해 마련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하도록 규정
기타 규정	① 독립이사제 도입 에 따른 용어 정비 등	· 시행령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용어를 “독립이사”로 변경(제31조 제4항 및 제34조 제1항) 등
	② 자기주식 대상 교환·상환사채 발행 금지에 따른 규정 정비	·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상환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을 금지함에 따라 상법 시행령 개정(제22조, 제23조)
	③ 전자적 방법에 의한 휴면회사의 영업신고 허용	· 휴면회사의 영업신고 방식은 서면신고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국민 편익을 위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영업 신고를 허용(제28조)